

군포도시공사 제4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1년 6월 3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73호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감염병(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호 명시) 예방접종을 할 때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	부	서	경	영	지	원	부
입 안 자	직 성	위 성	명 명	이	현	동	경 영 지 원 부 장	
							인 사 총 무 팀 장	
	담당자 성명 (전 화)		이 태 권 (390-7615)					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공가) <생략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생략> 2. <생략> 3. <생략> 4. <생략> 5. <생략> 6. <생략> 7. <신설> 	<p>제32조(공가) <현행과 같음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현행과 같음> 2. <현행과 같음> 3. <현행과 같음> 4. <현행과 같음> 5. <현행과 같음> 6. <현행과 같음> 7. <u>감염병(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호 명시)</u> <u>예방접종을 할 때</u>